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맨발걷기 국민운동 계획 수립·활성화 및 연구·홍보·교육 등 》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2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개요	1
II. 검토 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2. 조문별 검토	12
가. 제명, 목적 및 정의(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12
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안 제3조)	14
다. 맨발걷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15
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18
마. 지자체의 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안 제7조 및 제11조)	22
바.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및 맨발걷기시설 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및 제10조)	25
사. 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및 연구 결과의 활용(안 제13조 및 제14조)	29
아. 맨발걷기 지도자 양성(안 제16조)	31
자.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	33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35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2. 제안이유

최근 암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심·뇌혈관질환, 신장염, 치매, 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자가면역질환과 감염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로 암·심뇌혈관질환·치매·파킨슨병·아토피·류마티스관절염 등 질병의 치유, 척추관협착증·요통 등 통증의 감소, 불면증 및 스트레스의 감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및 혈당 수치의 개선, 소화기능 개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의 개선 등 다양한 치유 경험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 효과와 땅속의 자연 에너지가 인체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접지 효과가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맨발걷기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맨발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단법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2018년 발족한 이후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25년 7월 현재 17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맨발걷기가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에 직면함. 특히,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 연구가 미비하여 그 효과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겨울철에는 그에 적합한 맨발길 부족으로 맨발걷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봄·여름·가을에 축적한 건강이 겨울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맨발걷기길·동절기용 방한맨발길 등을 확충하며, 맨발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고 홍보하여 맨발 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함으로써,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맨발걷기 국민운동”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기관·단체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을 총칭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설치·운영하여야 함. 특히,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그 개발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설문조사·치료 경험 연구, 의료비·건강보험료 영향 조사, 착용형 건강측정기를 통한 건강지표 분석, 혈액·소변 검사 결과와 맨발걷기 연관성 연구, 맨발걷기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관한 병원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 등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교재의 발행·공급과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7조).

거.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하고, 이 때 맨발걷기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II.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금번 제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은 국민건강 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총 4개 장과 19개 조로 구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셋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설문조사·치료 경험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연구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 여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교재의 발행·공급과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15조 및 제16조), 그 외 매년 5년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하고, 이때 맨발걷기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8조) 등임.

<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맨발걷기 좋은 환경 조성, 맨발걷기 국민운동 전개로 맨발걷기 활성화
제2조	정의	• 맨발걷기 국민운동: 국가, 지자체, 맨발걷기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 • 맨발걷기시설: 맨발길 및 동절기용방한맨발길과 그에 부속된 세족시설·신발장·비가림막·화장실 등 각종 시설 • 맨발걷기우수마을: 맨발걷기시설이 잘 설치·운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 맨발걷기, 맨발길, 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정의도 규정)
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국가·지자체: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 시책 수립·시행 및 자원 확보, 건강증진 효과 실증 위한 정책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제4조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맨발걷기 국민운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6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보건복지부에 심의기구인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	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자체장이 맨발걷기시설 설치·운영하고, 기초지자체장은 1개 이상 동절기용방한맨발길 설치·운영할 의무 부과

제8조 · 제10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를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도 가능하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제9조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가 및 지자체의 맨발걷기 국민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1조	맨발걷기 우수마을 지원 등	• 기초지자체장의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정 및 지원
제12조	국제교류 및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기관 및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협력
제13조 · 제14조	맨발걷기 효과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맨발걷기 효과 조사·연구 수행 및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에의 반영
제15조 · 제16조 및 제18조	교재 발행,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육정책에 의 반영	• 맨발걷기 교재 발행·공급, 교육 실시 및 지도자 양성, 교육정책에의 반영
제19조	맨발걷기 의 날 지정·운영	•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

□ 한편,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곳(충북 제외),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1곳에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전국적으로도 384개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 맨발걷기길 조성 현황 >

구분	개수	구분	개수	구분	개수	구분	개수
서울	55	대전	6	충북	12	경남	18
부산	8	울산	9	충남	7	제주	-
대구	14	세종	10	전북	12	총계	384
인천	9	경기	112	전남	50		
광주	40	강원	10	경북	12		

자료: 보건복지부(원 출처 :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카페)

□ 참고로, 2024년의 경우 지역 맨발걷기 길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22억원이 교부된 바도 있음.

<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부산 영도구	아미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300
부산 사하구	하단동 맨발 황톳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800
경기 수원시	서호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500
전북 전주시	인후공원 및 기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200
전남 화순읍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경관개선사업	400
총계		2,200

출처: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행정안전부, 2025. 3.)

□ 건강 관리를 위해 비용 부담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는 생활 운동이자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맨발걷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금번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금번 제정안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보다 원만한 입법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겠음.

< 문체부 소관 관련 법률 현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건강운동관리사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하 생략)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5. 4. 8. 제정, 2026. 4. 9. 시행)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

□ 그 외, 맨발걷기가 혈액 순환 촉진, 항산화, 면역력 촉진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²⁾와 함께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과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³⁾도 제시(교육부, 건보공단, 인천시, 경기도 등)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학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봄.

□ 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 및 맨발걷기 등 생활 속 운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성 확보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을 통해 생활 속 신체활동 촉진, 걷기 활성화, 치유관광자원 개발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제정법 제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규정도 제정안의 맨발걷기우수마을(안 제11조), 맨발걷기 정보체계 구축·운영(안 제17조), 맨발걷기지도자 양성(안 제16조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2) 고장면 외, 「맨발걷기 효과의 과학적 입증 - 혈액건강 및 전인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찰」, 이개호의원실 주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5. 7. 16.

3) 미국 당뇨병학회(ADA)의 Diabetes Foot Care Tips)에서는 집 안에서도 맨발을 금지하고, Karsten Hollander 등의 「Long-Term Effects of Habitual Barefoot Running and Walking : A Systematic Review」,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017에서는 장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 및 맨발걷기 등 생활 속 운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성 확보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 제정 법은 불필요하며, 기존 법령 내에서도 생활 속 신체활동 촉진, 걷기 활성화, 치유관광자원 개발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 신체활동 증진 차원에서 추진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맨발걷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지도사와 중복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맨발걷기지도자의 역할은 맨발걷기 실천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해진 교육에 한정되어야 하며(자연환경 활용 걷기 지도, 생활습관 개선형 교육, 체험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인 운동 치료적 접근(의학적 운동처방, 질환자 운동관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한 등을 두는 등 명확한 활동 범위를 지정해야 할 필요
교육부	학령기 청소년 대상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과와 정규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및 학생·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학생 대상 맨발걷기 교육 계획(안 제5조제1항·제2항), 교재(안 제15조), 교육정책 반영(안 제18조) 등과 관련한 부분은 신중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부령 이하에 근거한 위원회로 운영 또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 -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하여 ‘맨발걷기 활동 단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 및 타 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도 고려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 관련, 과학적 효과성 등이 미비한 특정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은 타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정적 재원에 대한 감소 우려
지자체	- 인천광역시: 과학적 근거 부족, 감염 등 안전성 논란, 접근성·보편성 한계, 기존 걷기 사업과 중복 고려 시 별도법 신설보다는 「생활체육진흥법」 등 관련 제도 내 지침 수준에서 검토함이 타당 - 경기도: 건강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 부족, 동절기용 맨발길 조성 등 시설 설치에 과도한 예산 소요, 당뇨병 환자·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상해·감염 등 안전 위험이 존재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충청남도: 기상·안전 문제, 시설 설치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우려 - 전라남도: 맨발걷기 시설 설치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필요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정의(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제명을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면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맨발길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정의(안 제2조)하고 있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국민운동”이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맨발걷기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을 말한다.
2.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천연의 흙·황토·모래 등으로 조성된 길로서 지구와 연결된 길을 말한다.
4.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이란 겨울철이나 악천후에도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유리온실이나 캐노피, 비닐하우스 등 난방시설이 설치된 실내외 맨발길을 말한다.
5. “맨발걷기시설”이란 맨발길 및 동절기용방한맨발길과 그에 부속된 세족시설·신발장·비가림막·화장실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
6. “맨발걷기우수마을”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맨발걷기시설이 잘 설치·운영되는 지역(통, 리, 마을 또는 특정구역 단위의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먼저, 제명 등에서의 ‘맨발걷기 국민운동’은 맨발걷기는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확산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맨발걷기와 같은 생활운동의 경우 자발적·자율적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운동’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활성화’ 등과 같은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현재 ‘국민운동’이 포함된 법령명은 없으며, 1964년 8월 14일 폐지된 법률인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국민운동본부직원법」 등 일부 법률에 국민운동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사례가 있었음.

□ 아울러, 정의 중 “맨발길”을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천연의 흙·황토·모래 등으로 조성된 길로서 지구와 연결된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장소를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뜻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안 제3조)

-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필요 시책 수립·시행 및 자원 확보 노력 규정과 함께,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확산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 확인 작업 없이 제정안(제3조제2항)에서 국가로 하여금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음.

다. 맨발걷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맨발걷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제4조(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및 개선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5.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6. 맨발걷기 교육 및 홍보 활동
7.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발걷기 교육 시행 계획은 교육부장관과 협력하여 수립·시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발걷기 교육 시·도 시행계획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맨발 걷기 국민운동 시·군·구시행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먼저, 기본계획에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목표 및 추진방향,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본계획에는 ‘맨발길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하되,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학적 효과성 등이 미비한 특정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은 타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안 제6조제1항제3호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겠음.

□ 아울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환류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을 평가하

여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신체 활동 활성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수립·시행 중에 있으므로 맨발걷기 국민운동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의사·한의사·건축사 또는 기술사, 판사·검사·변호사,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교수 등 등을 위원으로 하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제6조(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맨발걷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맨발걷기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의 맨발걷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및 맨발걷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한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1.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처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둔 것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맨발걷기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및 맨발걷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의사·한의사 등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은 국가 주도의 관행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각 구성원 간 중복 가능성 및 건축사 또는 기술사, 판사·검사·변호사 등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교육·홍보를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수행하여야 할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안 제3조),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계획(안 제5조)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제정안에 규정된 지자체의 역할 >

▪ 지자체의 책무(안 제3조)	-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필요한 자원 확보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 위한 교육 및 홍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맨발걷기시설 설치·운영(안 제7조)	- 동절기용방한맨발길 시·군·구마다 1개 이상 설치 등 맨발걷기시설 설치·운영 의무 부과
▪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지원
▪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안 제9조)	- 맨발걷기 교육, 맨발걷기 건강 증진 체험, 맨발걷기와 관광 연계 등
▪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맨발걷기시설 설치 지원(안 제10조)	- 맨발걷기시설 설치 의료기관 등에 설치비 등 지원
▪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안 제11조)	- 통·리·지역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정 가능
▪ 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안 제14조)	- 맨발걷기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 계획 등에 활용 및 홍보 실시

□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과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⁴⁾하고 있어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맨발걷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신체활동’에 해당하는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령 이하에 근거한 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지자체의 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안 제7조 및 제11조)**

- 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시·도계획이나 시·군·구계획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기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맨발걷기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1조).

제7조(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계획이나 시·군·구계획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포함하여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실내나 그 밖의 소관 체육시설의 실내 또는 공원 등에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설치·운영·점검·보수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맨발걷기 국민운동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통장·이장 또는 그 지역 대표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맨발걷기우수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제정안과 같이 지자체장이 맨발걷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특히 기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절기용맨발길을 시·군·구마다 1

개 이상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은 동절기 맨발걷기 인프라 부족도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하나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나, 보다 실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법안의 직접 당사자로서 지역적 특성,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지자체의 의견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음. 그 외, 안 제7조제1항에서 ‘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경우 맨발걷기시설에 맨발길이 포함되므로 자구 정비가 필요하겠음.

-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맨발걷기우수마을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2026. 4. 9.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맨발걷기우수마을과 지역적으로 중복 운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장이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 안전관리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및 맨발걷기시설 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 및 제10조)

-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맨발걷기 국민운동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 등의 방식을 포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0조).

제8조(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 단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맨발걷기시설 설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등에서 그 환자·수급자·거주자 및 이용자 등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처럼 제정안에서 맨발걷기 활동 단체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국·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맨발걷기 활동 단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생활체육법」(제11조)에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함.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고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은 처분이 제한되고,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국유재산법」 제27조·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20조).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 다만,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지원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규정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음.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맨발걷기 활동 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내용 및 조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정하게 하는바(안 제8조제3항), 국·공유재산에 대한 예외 인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할 필요도 있겠음.

□ 그 외, 국가 및 지자체의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보급(안 제9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제교류 및 협력(안 제12조)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민건강증진 관련 연구·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그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임.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 5. (생략) 6. ~ 8. (생략)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 12. (생략) ③ ~ ⑥ (생략)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안 제8조제2항에서 ‘맨발걷기 활동 단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공유재산 무상 사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지자체의 직접 사용 제한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기관·단체·소상공인·주민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및 연구 결과의 활용(안 제13조 및 제14조)

- 제정안에서는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참고하여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3조(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의료기관·연구소·대학·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외 공신력있는 문헌 및 자료의 조사, 설문 조사, 치료경험담의 조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효과 연구
2. 맨발걷기가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3. 착용형 건강측정기(wearable healthcare device)에 의한 심박수·혈압·심전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의 조사 및 연구
4. 맨발걷기 정도가 혈구수치,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신장기능 수치, 혈당 수치, 혈뇨 수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5. 맨발걷기 정도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의료기관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연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방법과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를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효과를 참고하여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 맨발걷기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액순환 촉진, 항산화 및 면역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제정안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좀 더 심도있게 분석 및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조사·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 정책을 보다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법률에서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절차적으로 맨발걷기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임.

□ 아울러, 건강보험료 할인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으로 타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 맨발걷기 지도자 양성(안 제16조)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맨발걷기지도자’라는 국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6조(맨발걷기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바른 맨발걷기 실천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맨발걷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맨발걷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는 맨발걷기 운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국가적으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 교육되고 지도됨으로써 맨발걷기 운동이 건강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안전사고 방지에도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해됨.
- 「자격기본법」(제11조)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맨발걷기지도자에 대한 국가자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 ⑤ (생략)

□ 참고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중 걷기 관련은 87개이고, 이 중 맨발걷기 관련 12개가 발급되어 있음.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 부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중 하나인 ‘건강운동관리사’ 영역과 제정안의 맨발걷기 지도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u>건강운동관리사</u>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

□ 참고로, 건강운동관리사는 2015년 체육지도자 제도 변경으로 ‘생활체육지도사 1급’이 개편된 형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5명이 양성됨.

자.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

- 제정안에서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제19조(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①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날과 맨발걷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맨발걷기의 날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매년 ‘맨발걷기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맨발걷기에 관한 교육·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유권자의 날’ 등 5월 10일을 법정기념일로 하고 있는 다수 사례가 있는 가운데, 제정안과 취지가 유사한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따른 ‘보건의 날’(4월 7일) 및 「스포츠기본법」(제27조)에 따른 ‘스포츠의 날’(10월 15일) 등도 있음.

< 5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한 타 입법례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 ④ (생략)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맨발걷기의 날과 유사한 취지의 기념일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500